

2019년도 제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4. 3.(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손승수(분과위원장), 강상욱, 백대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3건(안건번호 제2019-6672~672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건 심의안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저작권자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그러므로 안전번호 제2019-6672~6721호(53건의 게시물)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심의안건인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물로 저작물에 해당
해당 복제물들을 복제 및 전송한 자들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들이라 보이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시정조치가 요구됨
이번 심의안건인 총 5가지 유형의 영상저작물들('폴라', '레고 무비2', '해피 테스데이 2 유, '드래곤 길들이기 3, '왕이 될 아이')의 경우에는 2019년 최신 개봉작이거나 현재 상영중인 영상물로 모두 불법복제물이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C 위원 : 폴라(Polar, 2019), 레고 무비2(The Lego Movie 2: The Second Part, 2019), 해피 테스데이 2 유, 왕이 될 아이, 등 4건이 2019년 개봉작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이 막대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시정권고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드래곤 길들이기 3'은 현재 상영중인 영화로서 불법 복제물로 인한 영향력이 더욱 막대합니다. 금번 심의안건은 최근 개봉되었거나 상영중인 저작권리가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견없이 가결하며,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제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0.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